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85호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5. 1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85호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 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중소기업청장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4.4.16. 세월호 사고 피해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과 같은 재해·재난 등과 관련한 특별지원제도 신설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해·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햇살론 지원요건·심사절차 완화 등을 적용하는 특별지원제도 신설

3. 의견 제출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60, 팩스 042-472-3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 대상자 개정고시(안)

발령 2014.00.0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00호

I. 목 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의한 개인신용보증계정으로 시행하는 “근로자 생계보증대출(햇살론)”의 대상자 및 기타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대상자

가. 생계자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되거나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중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되, 급여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

나. 대환자금

- 생계자금 대상자(아래의 보증제한대상 중 회생절차 진행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의 연이율 20% 이상인 대출채무를 정상상환중 일 것(해당 대출은 대출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2.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함)

Ⅲ. 기타

가. 연간 근로소득 산정

- 연간 근로소득 산정은 신용보증 신청접수서류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최근 3개월간 급여통장 등에 의해 산정(환산)한 1년간의 소득금액을 적용함

나. 보증제한 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각각 “재단”, “신보” 및 “기보”라 함)에 보증잔액이 있는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자. 단, 당해 절차에 의해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중인 근로자는 생계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다만, 빈번한 연체의 범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

다. 재해 등 긴급상황과 관련된 예외조치

- 특별재난지역내 피해자 및 피해 유가족,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고시에서 정한 대상자, 기타 운영사항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